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8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3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8. 3(월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(FTA)이행과
담당과장	안홍상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이재호 사무관(044-203-5762)

제3차 한-중국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개최

- 지방경제협력, 산업협력단지,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-
-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** 발효 6년차*를 맞이하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**제3차 한-중국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**를 8월 3일(월)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.

* (한-중 자유무역협정 주요경과) 협상기간: '12.5월~'14.11월, 서명: '15.6월, 발효: '15.12.20일

○ 우리측은 **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**, 중국측은 첸 닝(Chen Ning) **상무부 국제사 부사장**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.

< 한-중국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>

▷ 목적 : 한-중국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

▷ 일시/장소 : '20.8.3(월) /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

▷ 참석자 : (한국)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27명
(중국) 첸 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등 20여명

□ 한-중 자유무역협정은 발효 6년차('15.12월 발효)로 **'18년 교역액은 '15년 대비 18.2% 증가**하였고, **'19년에는**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**감소**(△9.3%) 되었지만, **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/4**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**제1위 교역 대상국**이다.

* 대 세계 교역액(억 달러) : ('18년)11,401 ('19년)10,558 / 대 중국 교역액(억 달러) : ('18년)2,686 ('19년)2,434

□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**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**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, **현재 이행 현안**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❶ (**기존 논의사항**)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**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**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, 한-중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**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다.**

○ **중국 현지 투자기업**(LG화학, 삼성SDI, SK 이노베이션 등)**이 생산한 배터리**를 장착하는 **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**된 사안에 대해서는 **'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**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.

* 보조금 대상차량 : 테슬라 모델3(LG화학), 충칭진킹(삼성 SDI), 벤츠 PHEV(SK 이노베이션) 등

○ 또한, 한-중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통로를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**악의적 상표 선점* 문제 해결**을 위해 중측은 **상표법을 개정****('19.11월 시행)한 바, 원활한 이행을 위해 **지속적으로 상호 점검**하기로 하였다.

*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,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선점
**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(개정 상표법 제4조 및 제19조)

○ 아울러, 한-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강화된 **인천-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**은 **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**('18.7월), **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**('19.12월) 등의 성과를 보이며 **활발하게 진행**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.

- 이외에, 우리측은 한-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**한-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**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

❷ (**주요 성과**) 양측은 이번 공동위 계기, 전 세계적으로 **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* 등**을 감안하여,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**별도 협의 통로의 중요성**에 공감하고 **한-중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**를 진행하였다.

*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('18년, 관세청) : 수출(32.8%, 1위), 수입(16.9%, 3위)
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(한국소비자원) : ('17년)793→('18년)1,342→('19년)2,312

○ 아울러, 현재 진행 중인 한-중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이 **서비스·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**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.

○ 이에 더해, 우리측은 5.1일부터 시행된 **한-중 신속통로**(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) 제도를 **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** 평가하였다.

- 다만, 일부 **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*를 호소**한 바, 중측과 **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(예시) 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,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

❸ **(현행 의제)**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, **우리측**은 중측에게 **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**하는 한편, **중측**은 **위생검역조치**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○ 우리측은 **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**하면서, 한-중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**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*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**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.

* 한-중 자유무역협정상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(방송의 복제권·동시중계방송권)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, 現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

※ 금년 4.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출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, 동년도 4.30일~6.13일간 의견 수렴 절차 진행

○ 그 밖에, 양측은 제1차 관세위('17.1월) 당시 **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**하기로 합의한 바, 이를 반영하기 위해 **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**키로 하여,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.

* (원산지 증명서 품목확대 필요성)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,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에서 애로를 지속 제기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개최하여 **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**하고, **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**하고 양국간 **교역·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**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이재호 사무관(☎ 044-203-57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